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9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서지영·곽규택·성일종

이헌승 · 김승수 · 이종배

정성국 · 박성민 · 정연욱

박수영 • 박충권 • 인요한

김대식 · 김도읍 의원

(149]

제안이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방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처럼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의 소멸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은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현행법상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 적임.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 소재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학·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 라.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제도 개선"을 "제도 개선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역의 산업·사회를 연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의 육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글로컬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5.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에 따른 지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으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지원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을 "제17조의2에 따른 글로컬대학의 지정 및 지정 취소"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대학지원협약(이하 "대학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의2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지원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의 지역혁신역 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대학지원협약의 사업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글로컬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사회 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 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글로컬대학(이하 "글 로컬대학"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컬대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경우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④ 글로컬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⑥ 글로컬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성화"를 "글로컬대학 대학 육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제도 개선과 관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 <u>기관 간의</u> 협력-----하 사항 6. 지역의 산업 · 사회를 연계하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여 교육 경쟁력을 갖춘 글로 사항 컬 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교육부장 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 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 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 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글로 컬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5.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대학등과의 협 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이 지원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 · 조정한다.
- 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 3. (생략)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 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 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 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 수 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현 행과 같음)

- 1. <u>제5조제1항</u>에 따른 <u>기본계획</u> 1. <u>제5조제1항</u> 및 제5조의2제1 항----기본계획 및 지원 전략-----
 - 2. · 3. (현행과 같음)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 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 8. (생략)

-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제17조(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 제14조에 따른 지 | 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 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 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 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제17조의2에 따른 글로컬대 학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 한 사항
 - 5. ~ 8. (현행과 같음)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 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 함된 대학지원협약(이하 "대학 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의2 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지원 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 을 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학지원협약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 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신 설></u>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지원협약에 따라 대학의 지역 역 연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있다.
 - ⑤ 그 밖에 대학지원협약의 사업범위,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글로컬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
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

- 학을 글로컬대학(이하 "글로컬 대학"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컬대 학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경우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 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지정된 경우
-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① 글로컬대학의 지정이 취소 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글 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①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 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 용할 수 있다. ⑥ 글로컬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 ·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글로컬대학 대학 육성---

② ~ ④ (현행과 같음)